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73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이달희 · 김상훈 · 김태규  
서천호 · 고동진 · 임종득  
우재준 · 김예지 · 강선영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 구성, 운영 및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u></p> <p><u>② 감사위원회의 직무, 구성, 운영 및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p>